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7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2.

발 의 자: 안상훈·최보윤·안철수

이성권 • 박성훈 • 조정훈

고동진 · 김소희 · 정연욱

한지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업 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에 불편과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경우에는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.

이에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·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예외를 신설함으로써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확대 및 경쟁 활성화를 통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을 확보하고자 함(안제48조제3항제2호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·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 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 참여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3항제 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국가기관등의 장이 소프트웨 어 사업을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48조(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	제48조(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		
사업 참여 지원) ①・② (생	사업 참여 지원) ①・② (현행		
략)	과 같음)		
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	3		
전단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			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			
에는 대기업(제5호의 경우에는			
해당 공공기관인 대기업만 해			
당한다)인 소프트웨어사업자를			
참여시킬 수 있다.			
1.・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		
<u><신 설></u>	2의2.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		
	한 관련이 있거나 사회ㆍ경제		
	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		
	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		
	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		
	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		
	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		
	<u>경우</u>	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	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		